

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행정·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등 32개 업무를 파견 대상 업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30.(수) 한국경제, 임원 출신도 월 200만원?…파견법에 갇힌 고숙련 은퇴자들

2. 설명 내용

- 현행 파견법은 전문지식·기술·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32개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음
 - 이러한 업무에는 행정·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,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,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등이 포함
 - 따라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사, 노무, 재정 전문가 등의 업무도 파견 허용업무에 해당
- 한편, 파견근로는 정규직과는 다른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므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
 - 정부도 파견제도 남용을 예방하고 파견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누리 (044-202-7575)